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근거 신설〉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5호)

2024.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참고사항 .....       | 2 |
| IV.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 · 어기구 · 박 정 ·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이수진 · 임미애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 의안번호 : 310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br>(생략)<br><u>&lt;신설&gt;</u>                                                      |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br>(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 ③ (생략)                                                                                                 | ③ 제1항 또는 제2항-----<br>-----<br>-----<br>-----<br>-----<br>-----<br>-----. |
| ④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⑤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br>-----<br>-----<br>-----                          |

| 현행                                                                  | 개정안                                                           |
|---------------------------------------------------------------------|---------------------------------------------------------------|
| <p>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 <p>-----</p> <p>-----</p> <p>-----.</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

현행 「국회법」 제128조 1)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2)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이라 함)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서의 발부와 송달(제5조)3),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고발조치(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시의성 있는 자료확보를 위하여 국정감사·조사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 활동을

1)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3) 「증언감정법」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국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대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증언감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sup>4)</sup>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확보를 보다 원활히 하고, 국정감사·조사 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①국회법상 대외적 행정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대표권<sup>5)</sup>을 갖는 의장·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②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사의 결정은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고 ③현행법도 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sup>6)</sup>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 4) 「증언감정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 5)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6)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자료제출요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표-2] 현행 국회관계법상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 법 률     | 자료제출요구 요건                                                                |
|---------|--------------------------------------------------------------------------|
| 인사청문회법  | <u>위원회 의결</u>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
| 국회법     | <u>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u>                                                  |
|         | 청문회,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는 <u>위원회 의결</u>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
|         |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u>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u> 후 해당 기관에 요구 |
| 국정감·조사법 | <u>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u>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

참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표-3] 주요국 의회의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 국가     | 주체                  | 내용                                          |
|--------|---------------------|---------------------------------------------|
| 미국     | (상원) 상임위, 소위원회      | 소환장에 의해 서신, 서적, 문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        | (하원) 위원회, 소위원회      | 서적·기록·서신·각서·문서 등의 제출을 소환장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요구 |
| 영국(하원) | 공법안심사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 의사규칙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여부를 각 위원회별로 달리 규정         |
| 일본     | 각 의원(議院)과 각 의원의 위원회 | 각 의원(議院) 또는 위원회가 심사·조사를 위해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 |

\* 자료: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3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한편, 국회관계법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4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102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4] 유사취지 계류법률안의 주요 내용

| 국회법<br>개정안<br>(김정호의원안)                                                                  | 증언감정법<br>개정안<br>(김정호의원안)                                                                                                                                                   | 동 개정안<br>(김정호의원안)                                                                                                         | 인사청문회법<br>개정안<br>(김정호의원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의 안전 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의 안전심의,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 발부</li> <li>• 의원 자료 제출요구서의 전자문서 송달 근거 마련</li> <li>•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한 의원의 고발 근거 의무 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국정감사·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근거 마련</li> <li>•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규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li> <li>• 요구시 5일 내 제출 및 경과 사유서 제출</li> <li>• 불응 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경고 근거 마련</li> </ul> |

|              |
|--------------|
| 문 의 처        |
| 02)6788-5014 |